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33
----------	-----

2024. 7. 15.(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7월 15일

-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안 제10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
- 충청북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충청북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치)
출생아 수	9,333명	8,607명	8,190명	7,452명	7,600명
합계출산율	1.050	0.983	0.949	0.871	0.89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전국 거주 25세~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24)'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 이유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산 비용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제10조의2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산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출산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
-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제1항2)에 따라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3)에 따라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의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에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772,8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이 계상되어 기(既) 의결된 바 있는 사업으로,
 - 사업대상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1천31만원 이하, '24년 기준)이며 지원내용은 대출한도 1,000만원 한도 내 3년 간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산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출산 가정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의 주요 기피 이유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2) 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3)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본 사업의 경우, 도 내 11개 시·군 중 사업 대상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와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이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청주시와의 조속한 협의가 요구됨.

- 본 조례안은 내용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또한 조례안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① 도지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0조의2(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① 도지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u></p>

관련법령 발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원기준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사업량 : 3,500가구
- 사업내용 : 출산 비용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3년간 年 최대 6% 이자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추진

3. 관련조문

- 안 제10조의2(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대출 이자 3년 지원에 따른 예산액 지속 증가
- 추계 결과 :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21,240백만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출	21,240,000	2,100,000	3,780,000	5,120,000	5,120,000	5,120,000
재원조달	21,240,000	2,100,000	3,780,000	5,120,000	5,120,000	5,120,000
자체수입 (지방세)	21,240,000	2,100,000	3,780,000	5,120,000	5,120,000	5,120,000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